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3492 판결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6. 20 선고 2017나6123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3492 판결

전 문

원고1. A

2. 주식회사 우즈오토코리아

피고1. B 주식회사

2. C

3. D

변론 종결 2017. 7. 6.

판결 선고 2017. 8. 10.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우즈오토코리아의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9,997,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주식회사 우즈오토코리아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우즈오토코리아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우즈오토코리아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83,384,4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상호 'E')은 2014. 4. 1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Nexia 차량용 부품 2종(품번 96239386, 96251078, 이하에서 각각 '제1부품', '제2부품'이라 한다)을, 제1부품은 개당 3,260원에, 제2부품은 개당 3,550원에 각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1, 2부품을 원고 주식회사 우즈오토코리아(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납품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다시 우즈베키스탄국에서 완성차를 조립, 양산하는 법인인 GM우즈베키스탄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제1, 2부품의 생산을 주식회사 세현피앤에이치(이하 '세현피앤에이치'라 한다)에 하도급 하였는데, 세현피앤에이치로부터 납품받아 피고 회사가 2015. 12. 29.부터 2016. 4.

27.까지 공급한 제1부품 9,500개, 제2부품 12,393개의 일부에서 누유(漏油)가 발생하였다. 제1,

2부품은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유압을 전달하는 장치의 구성부분 중 일부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운전 중 조향장치를 조작할 수 없게 되거나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라. GM우즈베키스탄은 2016. 5. 10.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제1, 2부품의 하자를 내세워, 원고 회사의 부담으로 순정품 제조업체인 F로부터 동종의 부품을 납품받아 항공 운송하여 줄 것을 원고 회사에 요구하였다.

마. GM우즈베키스탄은 2016. 6. 10. 원고 회사에 제1부품 9,500개, 제2부품 12,393개를 교체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면서, 그 교체비용으로 미화 262,716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16. 6. 15. 원고 A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교체품 단가	제1부품	6,800	9,500	65	원고 회사가 비용 선 부담
제2부품	6,800	12,393	84		
소계		21,893	149		
금형 제작비용	15,000,000	2	30		
항공운송료	40,000,000		40		
교체비용	14,040	21,893	307	개당 미화 12달러, 환율 1,170원/\$	
	526				

사.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제1, 2부품을 원고 A에게 공급할 당시 그 대표이사였다. 피고 D는 피고 C의 부친이다.

[인정근거]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 13,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원고들의 주장(최종 정리된 것에 따른다)

1) 원고 A의 청구의 근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납품한 제1, 2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정한 품질 보증의무 및 제5조에 정한 적시에 납품할 의무의 위반이다. 또한

피고 회사는 제1, 2부품을 직접 생산할 것처럼 원고 A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른 후 제1, 2부품의 생산을 세현피앤에이치에 무단으로 하도급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부친인 피고 D에게 회사의 업무를 일임하였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 A에게 하자 있는 제1, 2부품이 공급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고 D는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와 같이 제1, 2부품 생산의 하도급 여부에 관하여 원고 A를 기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은 '원고 회사가 청구할 손해배상금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진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A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이나 비용선급청구권(민법 제687조)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함은 명백한바, 이 부분 주장은 원고 A이 원고 회사에 아직 배상하지 아니한 손해에 관하여서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과 별도의 청구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원고 회사의 청구의 근거 원고 회사는 하자 있는 제1, 2부품의 대체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GM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원고 A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으므로, 그 구상권에 기하여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고유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나. 원고 회사의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회사가 피대위자로 주장하는 원고 A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원고 회사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고

있음은,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다.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물품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이 당초 약정한 채무의 내용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어떠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15717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하자 있는 제1, 2부품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상 제1, 2부품에 관하여 누유검사를 행할 의무가 없고, 세현피앤에이치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제1, 2부품과 유사한 부품을 생산하여 왔으며 완성차 업체의 동의 없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소위 '4M 규정'(원고들의 2016. 11. 29.자 준비서면 6-7면 참조)은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바, 그 취지는 결국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세현피앤에이치가 하자 있는 제1, 2부품을 생산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적절한 검수 없이 원고 A에게 납품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제1, 2부품이 공급된 데 피고 회사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여부

갑 제2, 3,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피고 회사는 전 생산공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주문자재에 대하여 원고 A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부품의 PL법(제조물책임)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3년경 피고 회사가 'GM코리아의 협력업체이고 다년간 관련 부품을 성공적으로 납품하여 왔으며 GM우즈베키스탄에 기 제출한 견본과 같은 품질의 부품을 공급하기로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GM우즈베키스탄 측에 교부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9. 25.경 원고 A을 통한 GM우즈베키스탄의 요구에 따라 제1, 2부품에 관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GM우즈베키스탄 직원들이 2015. 10. 1.경 피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제1, 2부품의 생산공정 등을 감독하고 그 무렵 원고 A에게 '피고 회사가 이들 부품의 순정품 공급자(original supplier)임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한 사실, GM우즈베키스탄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1, 2부품의 하자가 발견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가 아닌 세현피앤에이치에서 이를 생산하여 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M우즈베키스탄이 피고 회사의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원고들은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GM우즈베키스탄 측에서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D, 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년 가까이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그 생산처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9. 9. 의정부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제1, 2부품의 생산을 다른 업체에 도급하는 행위를 이 사건 계약서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21, 2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완성차 업체의 동의 없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이른바 '4M규정'과 같은 상관습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 회사가 제1, 2부품의 생산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경우 이를 당연히 계약상대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 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제1, 2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 C, D의 상법상 책임 여부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의 책임은 모두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임무를 해태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 D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회사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단순히 피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최종 정리된 주장에 따른다)

제1, 2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다음과 같이 합계 483,384,455원(= 154,017,255원 + 30,131,200원 + 40,000,000원 + 216,745,920원 + 42,490,080원)이다.

1) 제1부품 9,500개, 제2부품 12,393개(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의 각 교체품 납품에 소요된 비용 154,017,255원 [= 개당 단가 7,035원 × (9,500 + 12,393)개]

제1부품	7,922	0	1,578	9,500
제2부품	7,922	2,943	1,528	12,393
합계	15,844	2,943	3,106	21,893

2) 교체품 생산을 위한 금형 제작비용 30,131,200원

3) 교체품의 항공 및 내륙 운송비 40,000,000원(= 이미 교체된 제1, 2부품 합계 15,844개에 대한 항공 운송비 26,286,660원 + 내륙 운송비 1,867,000원 + 장래 교체 대상인 부품 3,106개에 대한 항공 및 내륙 운송비 11,846,340원)

4) 부품 1개당 미화 12달러(변론종결 시 환율인 1,140원/\$ 기준 13,680원)로 계산한

교체비용으로서, 이미 교체한 제1, 2부품 합계 15,844개에 대한 교체비용 216,745,920원 및 장차 교체할 부품 합계 3,106개에 대한 교체비용 42,490,080원

나. 원고 A의 손해 발생 여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참조).

2) 원고 A이 원고 회사든 누구에게든 제1, 2부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배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 한편 갑 제3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16. 6. 3.부터 2016. 7. 19.까지 제1, 2부품 각 7,922개를 F로부터 납품받아 GM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 18.까지 F에 물품대금 88,710,556원(제1부품은 개당 5,800원, 제2부품은 개당 5,398원), 금형 제작비용 30,131,200원, 항공운송료 26,286,660원, F 공장으로부터 공항까지의 국내 운송료 1,867,000원(그 외에도 위 사실조회결과에는 원고 회사가 직접 구매하여 F에 제공하였다는 사급품 비용 50,8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급품의 경우 제1, 2부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금원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는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미 위 금원 이상의 배상을 원고 A에게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 A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금원을 상한으로 하여 그 중 통상의 손해 내지 원고 A이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 인정되는 금액 상당은 원고 A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현실적,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될 채무이고, 따라서 원고 A은 그와 같이 부담하게 될 채무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다. 손해의 범위

1) 교체품 대금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자신이 원고 회사에 공급한 제1, 2부품이 GM우즈베키스탄에서 완성차 조립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 회사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공급한 제1, 2부품에 자동차 조립에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조립 공정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GM우즈베키스탄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품을 공급할 것임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교체품 공급대금 상당은 원고 A이 원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고 A에 대한 관계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11, 17,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5. 11. 16.경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원고 A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였고, 2016년부터는 제1부품의 단가를 3,586원으로, 제2부품은 3,905원으로 각 적용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에서 2015. 12. 29.부터 2016. 4. 27.까지 출고된 로트(lot,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군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서 하자 있는 제1, 2부품이 발견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출고된 로트에 속하는 제품의 개수는 제1부품이 9,500개, 제2부품이 12,393개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6년 중 제1, 2부품 각 7,922개가 교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각 교체품 수량에 원고 A과 피고 회사가 합의한 2016년도의 납품단가(기록상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 2부품의 시가 내지 통상적인 제작비용을 알 수 없으나, 피고 회사가 스스로 하자 있는 제1, 2부품의 교체품을 제작하더라도 적어도 위 납품단가 상당은 소요될 것임이 명백하다)를 곱한 금액 상당인 59,343,702원[= (3,586 + 3,905)원 × 7,922개]은 피고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 A이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통상의 클레임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거나(그와 같은 절차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통상의' 절차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의사를

무시하고 거래처를 F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원고 A과 피고 회사의 각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 A이 주장하는 교체품 수량 중 이미 납품된 제1, 2부품 각 7,922개를 넘는 부분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원고들이 비용을 들여 교체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 A이 교체품 공급 요구나 공급금액 상당의 배상청구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부품대금 상당의 채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A은 제1, 2부품의 교체품 단가가 사급품인 니플과 플레어너트 가액을 포함하여 각 7,035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사급품이 제1, 2부품의 제작에 실제로 투입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같은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는 2016. 5. 10. 원고 회사에 제1부품의 단가를 6,800원, 제2부품의 단가를 6,798원으로 각 제안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6. 5. 11. 이를 수락하여 제1, 2부품의 제작을 요청한 사실, 원고 회사도 2016. 6. 15. 제1, 2부품의 단가를 개당 6,8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회사가 F와 최초 합의된 단가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사급품을 구입하여 공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예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급품을 제외하고 원고 회사가 F에 지급한 단가인 5,800원(제1부품) 또는 5,398원(제2부품)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16, 18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6. 4. 27.경 크림프(crimp) 공정 과정에서 부품 위치가 고정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부품 치수의 오차로 인하여 불량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GM우즈베키스탄 측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피고 회사가 제출한 교체품도 공차(公差) 이상의 치수 오차가 발생한 사실, 원고들은 그 이후로도 하자보수를 위하여 피고 회사와 계속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GM우즈베키스탄 측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하자를 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6. 5. 10. 원고 회사에 F로부터 교체품을 공급받아 납품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 회사는 바로 그 다음날 F가 제안하는 단가를 그대로 수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실제로 피고 회사가 하자 없는 제1, 2부품의 교체품을 적기에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돌연히 피고 회사와의 교섭을 중단하고 F와 위와 같이 높은 단가에 제1, 2부품을 공급받기로 합의한 것은 GM우즈베키스탄 측의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피고 회사의 납품단가보다 1.5배 가까이 비싼 납품단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와 같이 합의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단가인 제1부품 3,586원, 제2부품 3,905원을 넘는 교체품 단가는 피고 회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회사는, 제1, 2부품 중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부품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가 발생한 부품이 포함된 로트의 전체 수량이 제1부품의 경우 9,500개, 제2부품의 경우 12,393개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다량의 부품을 일일이 검수하여 정상 제품과 하자 있는 제품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검수비용 또한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회사는 제1, 2부품의 단부에 부착된 금속제 크림프의 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불량여부를 용이하게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누유검사를 하면 제1, 2부품의 불량 여부를 확실히 판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납품단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불량품이 포함된 로트에 속한 제1, 2부품 전체가 하자 있는 부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 회사는 F가 납품한 제1부품 중 2,952개는 원고 A이 실제로 발주하지 않은 수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하자가 발생한 부품이 포함된 제1부품 로트의 전체 수량이 9,500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이미 납품된 9,500개 중 7,922개를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하여 주었다는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운송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부품의 경우 완성차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교체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A과 피고 회사도 모두 그와

같은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설령 피고 회사가 교체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공 수송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원고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항공운송료 및 공항까지의 국내 운송료 합계 28,153,660원(= 26,286,660원 + 1,867,000원)은 예견가능성 있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이다.

원고 A은 이에 더하여 장차 교체하여야 할 제1, 2부품 도합 3,106개에 대한 운송비 11,846,340원의 배상을 구하나, 이는 원고들 중 누구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현실로 지출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지출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금형 제작비용 이 부분 손해는 원고 회사가 F를 대신하여 제1, 2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비용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기록상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와 같이 발주자가 금형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 제3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금형의 소유권은 원고 회사가 보유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원고 회사가 지출한 금형 제작비용이 곧바로 원고 회사의 손해로서 이를 원고 A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금형 제작비용 상당의 손해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일 뿐이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교체비용 갑 제6, 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GM우즈베키스탄이 원고 회사에 개당 미화 12달러로 계산한 제1, 2부품 교체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도 원고 A을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교체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더하여 기록상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실제로 원고 A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얼마의 교체비용을 배상하였는지는 물론 원고 회사가 GM우즈베키스탄에 얼마를 배상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오히려 원고들의 2017. 1. 24.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소장 기재의 교체 대상품 가액 및 금형비, 항공운송비 합계 2억

1,900만 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A이 현실적, 확정적으로 위 교체비용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책임의 제한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교체품 대금 59,343,702원에 운송비 28,153,660원을 합한 87,497,362원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가 납품한 제1, 2부품 중 불량 발생하지 않은 부품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 A이 피고 회사에서 납품받은 제1, 2부품의 하자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인정금액의 8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69,997,889원(= 87,497,362원 × 0.8,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택수

판사유형웅

판사정연주